

■ 김성곤 쌤의 해사법규 <2021년 1판> 개정표 제1호 □ 2021.8월 1일 현재까지

교재 페이지 법령 종류	정 오	내 용
<p>p6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21.2.19. 개정)</p>	오	<p>■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lt;시행규칙 제74조&gt;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해도(승인된 전자해도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14호가목에 따른 항로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조석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등대표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p>
	정	<p>■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lt;시행규칙 제74조&gt;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등대표·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p>
<p>p91 어선법 아래에서 3째줄에 추가</p>	오	<p>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정	<p>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lt;시행규칙 제29조제2항&gt;</p>
<p>p121 국제선박등록법 위에서 10째줄</p>	오	<p>1.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이면서~</p>
	정	<p>2.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p>
<p>p126 선원법 시행령 (2021.2.19. 시행)</p>	오	<p>■ 선원이 아닌 사람 &lt;시행령 제2조&gt; 1.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6. 선박에서의 공연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p>
	정	<p>■ 선원이 아닌 사람 &lt;시행령 제2조&gt; 1.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p>

<p><b>p138</b> <b>선원법</b> (2021.6.15. 개정·시행)</p>	<p><b>오</b></p> <p>② <b>수장권</b> &lt;법 제17조&gt;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수장할 수 있다.</p>
	<p><b>정</b></p> <p>② <b>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b> &lt;법 제17조&gt;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b>▶ 추후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될 예정</b></p>
<p><b>p147</b> <b>선원법</b> 아래에서 10째줄 추가 (2021.6.15. 개정·시행)</p>	<p><b>정</b></p> <p><b>신 설</b></p> <p><b>7</b> <b>해외취업 신고</b>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lt;법제44조의2&gt; ▶ <b>2021.12.16.부터 시행</b></p>
<p><b>p147</b> <b>선원법</b> 아래에서 9째줄 수정</p>	<p><b>오</b></p> <p><b>7</b> <b>선원수첩</b> 선원의 신분증명서로서 선원의 고용계약관계·건강증명·선원교육훈련상황·자격 및 면허관계·승선이력·예비선원근무관계 및 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류이다. 그러므로 선원수첩은 선원의 보호·감독을 목적으로 해양항만관청이 해상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p>
	<p><b>정</b></p> <p><b>8</b> <b>선원수첩</b>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p>
<p><b>p148</b> <b>선원법</b> 아래에서 12째줄 삭제 (2021.6.15. 개정·시행)</p>	<p><b>오</b></p> <p>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p>
	<p><b>정</b></p> <p><b>삭 제</b></p>
<p><b>p149</b> <b>선원법</b> 위에서 8째줄 삽입</p>	<p><b>오</b></p> <p><b>삽 입</b></p>
	<p><b>정</b></p> <p><b>9</b> <b>신원신분증명서</b>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p>

<p><b>p150</b> 선원법 맨 아래 삽입 (2021.6.15. 개정·시행)</p>	<p>정</p>	<p><b>신 설</b> <b>11</b>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lt;법 제50조의2&gt;</p>
<p><b>p154</b> 선원법 시행령 맨 아래 수정 (2021.2.19. 개정·시행)</p>	<p>오</p>	<p><b>신 설</b> ▶ 대통령이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lt;시행령 제 17조의3&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p>
<p><b>p159</b> 선원법 시행령 위에서18째줄 삽입 (2021.2.19. 개정·시행)</p>	<p>오</p>	<p><b>신 설</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 &lt;시행령 제21조 5항&gt;</p>
<p><b>p159</b> 선원법 아래에서9째줄 개정 및 신설 (2021.6.15. 개정·시행)</p>	<p>오</p>	<p><b>7 승무정원</b> &lt;법 제65조&gt;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선원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해양항만관청이 발급한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만약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p171</b> 선원법 맨 아래 (2021.6.15. 개정·시행)</p>	<p>오</p>	<p>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p>
<p><b>p172</b> 선원법 아래에서 9째줄 (2021.6.15. 개정·시행)</p>	<p>정</p>	<p>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p>
<p><b>p180</b> 선원법 위에서 13째줄</p>	<p>오</p>	<p><b>3 사법경찰권</b> &lt;법 제127조&gt;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p>

수정	정	<p><b>㉓ 사법경찰권</b> &lt;법 제127조&gt;</p> <p>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87 선원법 시행령 위에서 10째줄 (2021.2.19. 개정 시행)	오	<p><b>신 설 삽입 -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제4항 만 삽입</b></p>
p189 선원법 위에서 2째줄 (2021.6.15. 개정 시행)	정	<p><b>☐ 권한 등의 위임·위탁</b> &lt;시행령 제52조&gt;</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p> <p>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점검</p>
p190 선원법 위에서 19째줄 (2021.6.15. 개정 시행)	정	6.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장하였을 때
	오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p191 선원법 위에서 19째줄 (2021.6.15. 개정 시행)	정	12.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p191 선원법 위에서 1째줄 (2021.6.15. 개정 시행)	정	9.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p191 선원법 위에서 23째줄 (2021.6.15. 개정 시행)	정	<b>신 설 삽입</b>
	오	4의2. 제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오	4의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p192 선원법 아래에서 16째줄 삽입	정	<b>신 설 삽입</b>
	정	<p><b>▶ 2021.12.16.부터 시행</b></p> <p>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p> <p>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p> <p>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208 선박직원법 아래에서 3째줄 개정 (2021.4.13. 개정 시행)	오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정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면허취소

<p><b>p209</b>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위에서 10째줄 수정 삽입</p>	정	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오	1.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p><b>p231</b> 해사안전법 위에서 4째줄 개정 삽입 (2021.4.13. 개정 시행)</p>	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p><b>p235</b>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위에서 7째줄 (2021.2.19. 개정 시행)</p>	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정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p><b>p237</b> 해사안전법 위에서 15째줄 개정 및 신설 (2021.4.13. 개정 시행)</p>	오	⑥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p><b>p240</b> 해사안전법 아래에서 7째줄 (2021.4.13. 개정 시행)</p>	오	지불을
	정	지급을
<p><b>p243</b> 해사안전법 아래에서 10째줄 개정 (2021.4.13. 개정 시행)</p>	오	신 설 삽입
	정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p><b>p245</b> 해사안전법 시행령 아래에서 3째줄 (2021.1.5. 개정 시행)</p>	오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발광·기류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발광·기류신호(깃발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p><b>p248</b> 해사안전법 위에서 1째줄 (2021.4.13. 개정 시행)</p>	오	신 설 삽입
	정	⑮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법 제43조의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p253</b> 해사안전법 위에서 4째줄 (2021.4.13. 개정·시행)</p>	<p>우  정</p>	<p>②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b>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유효기간</b>을 연장할 수 있다.</p>
<p><b>p258</b> 해사안전법 위에서 12째줄 (2021.4.13. 개정·시행)</p>	<p>우  정</p>	<p>⑤ <b>추월선(追越船)</b>은 좁은 수로등에서 <b>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b>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b>추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b> 기적신호를 하여 <b>추월하겠</b>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b>추월당하는</b>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b>추월선</b>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p> <p>⑤ <b>앞지르기 하는 배</b>는 좁은 수로등에서 <b>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b>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b>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b> 기적신호를 하여 <b>앞지르기로 하겠</b>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b>앞지르기당하는</b>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b>앞지르기 하는 배</b>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p>
<p><b>p260</b> 해사안전법 아래에서 14째줄 (2021.4.13. 개정·시행)</p>	<p>우  정</p>	<p>③ <b>추월</b> &lt;법 71조&gt;</p> <p>① <b>추월선</b>은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b>추월당하고</b> 있는 선박을 완전히 <b>추월하거나</b>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b>추월선으로</b>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b>추월하고</b>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추월선으로</b>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b>추월하는</b>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b>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b> 완전히 끝날 때까지 <b>추월당하는</b>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③ <b>앞지르기</b> &lt;법 71조&gt;</p> <p>① <b>앞지르기 하는 배</b>는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b>앞지르기당하고</b> 있는 선박을 완전히 <b>앞지르기하거나</b>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b>앞지르기 하는 배</b>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b>앞지르고</b>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앞지르기 하는 배</b>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b>앞지르기 하는</b>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b>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b> 완전히 끝날 때까지 <b>앞지르기당하는</b>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p>

<p><b>p263</b> 해사안전법 위에서 2째줄 (2021.4.13. 개정·시행)</p>	오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b>추월당</b>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b>앞지르기당</b>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p><b>p280</b> 해사안전법 위에서 15째줄 (2021.4.13. 개정·시행)</p>	오	1. 우현 <b>추월</b> : 장음 2회 + 단음 1회 ( 장장단 : — — • ) 2. 좌현 <b>추월</b> : 장음 2회 + 단음 2회 ( 장장단단 : — — • • ) 3. <b>피추월선</b> 의 동의신호 : 장음1회+단음1회+장음1회+단음1회 (장단장단 : — • — • )
	정	1. 우현 <b>앞지르기</b> : 장음 2회 + 단음 1회 ( 장장단 : — — • ) 2. 좌현 <b>앞지르기</b> : 장음 2회 + 단음 2회 ( 장장단단 : — — • • ) 3. <b>앞지르기 당하는 선박</b> 의 동의신호 : 장음1회+단음1회+장음1회+단음1회 (장단장단 : — • — • )
<p><b>p285</b> 해사안전법 위에서 1째줄 (2021.4.13. 개정·시행)</p>	오	<p><b>① 해양안전현장</b></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현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lt;법 제97조의2 1항&gt;</p> <p>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①항에 따른 해양안전현장을 관계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현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법 제97조의2 2항&gt;</p>
	정	<p><b>①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해양안전현장</b> &lt;법 제97조의2 &gt;</p> <p>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p>
<p><b>p285</b> 해사안전법 위에서 8째줄 (2021.4.13. 개정·시행)</p>	오	<p><b>② 해양안전의 날 등</b> &lt;법 제97조의3&gt;</p> <p>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p>
	정	<p><b>② 해양안전현장</b> &lt;법 제97조의3&gt;</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현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현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현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p285</b> 해사안전법 위에서 11째줄 (2021.4.13. 개정·시행)</p>	오	<b>신설 이동</b>
	정	<p><b>③ 해양안전의 날 등</b> &lt;법 제97조의4&gt;</p> <p>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p>
<p><b>p285</b> 해사안전법 아래에서</p>	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5째줄	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318 선박입출항법 아래에서 6째줄	오	<시행령 제22조 2항>
	정	<시행령 제22조 3항>
p353 도선법 시행규칙 위에서 2째줄 (2021.6.30. 개정·시행)	오	① 국제신호기류 중 H기류에 따른다.
	정	①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중 에치치 기류(H깃발)에 따른다.
p39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위에서 8째줄 (2021.6.30. 개정·시행)	오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	용골(선박 바다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p400 해양환경관리법 아래에서 4째줄	오	• 환경보전해역
	정	• 환경보전해역(4구역 :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p401 해양환경관리법 위에서 1째줄	오	• 특별관리해역
	정	• 특별관리해역(5구역 :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p40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위에서 10째줄 (2021.1.5 개정·시행)	오	3. 해역의 수질·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정	3. 해역의 수질·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p416 해양환경관리법 아래에서 7째줄 수정	오	■ 기름기록부비치 제외 선박
	정	■ 기름기록부비치 제외 선박(유조선 이외의 다음 선박)
p4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아래에서 15째줄 (2021.1.7 개정·시행)	오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정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p44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아래에서 9째줄 (2021.6.30개정·시행)	오	유겔화제
	정	유겔화제(기름을 굳게하는 물질)

<p style="text-align: center;"><b>p447</b> <b>해양환경관리법</b> <b>시행규칙</b> 위에서 4째줄 신설 삽입 (2021.1.7 개정·시행)</p>	<b>오</b>	<b>신설 삽입</b>
	<b>정</b>	<p>▣ <b>해양자율방제대</b> &lt;시행규칙 제35조의2&gt;</p> <p>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li> <li>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li> <li>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li> </ol> <p>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동경비</li> <li>2. 교육·훈련경비</li> </ol> <p>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p> <p>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li> <li>2.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li> <li>3.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li> <li>4.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li> </ol>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p457</b> <b>해양환경관리법</b> 아래에서 7째줄 (2021.4.13 개정·시행)</p>	<b>오</b>	5.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b>정</b>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p style="text-align: center;"><b>p461</b> <b>선박에서의</b> <b>오염방지에</b> <b>관한 규칙</b> 위에서 13째줄 (2021.6.30 개정·시행)</p>	<b>오</b>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b>정</b>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p style="text-align: center;"><b>p465</b> <b>해양환경관리법</b> <b>시행규칙</b> 아래에서 5째줄 개정 (2021.1.7 개정·시행)</p>	<b>오</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 3일 이내</li> <li>2. 1. 외의 교육·훈련과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 2일 이내</li> </ol>
	<b>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 3일 이내</li> <li>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 : 2일 이내</li> </ol>

<p><b>p493</b> 수상구조법 위에서 2째줄 개정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p>	<p><b>오</b></p>	<p><b>3</b> <b>각급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설치</b></p> <p><b>1</b> <b>각급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설치</b></p> <p>①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의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에 각각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p>
	<p><b>정</b></p>	<p><b>3</b> <b>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b></p> <p><b>1</b> <b>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b></p> <p>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p> <p>②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21.10.14 시행 이전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임</b></p>
<p><b>p495</b> 수상구조법 위에서 15째줄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p>	<p><b>오</b></p>	<p><b>1</b> <b>구조대 및 구급대</b> &lt;법 제7조&gt;</p> <p>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p>
	<p><b>정</b></p>	<p><b>1</b> <b>구조대 및 구급대</b> &lt;법 제7조&gt;</p> <p>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p>
<p><b>p500</b> 수상구조법 시행령 위에서 19째줄 (2021.1.5. 개정 시행)</p>	<p><b>오</b></p>	<p><b>3</b> <b>예항사실 등의 통보</b> &lt;시행령 제18조&gt;</p> <p>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b>예항(曳航)</b>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b>하여야</b>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b>그리하지 아니</b>하다.</p>
	<p><b>정</b></p>	<p><b>3</b> <b>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b> &lt;시행령 제18조&gt;</p> <p>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b>예인항해</b>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b>해야</b>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b>그렇지 않다</b>.</p>

<p><b>p509</b> 수상구조법 위에서 2째줄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p>	<p><b>오</b></p> <p>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b>수난구호민간인</b>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b>사람이</b>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b>민간해양구조대원</b>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p>
	<p><b>정</b></p> <p>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b>수난구호참여자</b>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b>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b>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b>민간해양구조대원등</b>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b>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p>
<p><b>p511</b> 수상구조법 위에서 6째줄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p>	<p><b>오</b></p> <p><b>⑥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b> 수상구조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법 제30조의5&gt;</p> <p>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b>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b>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을 것</p>
	<p><b>정</b></p> <p><b>⑥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b>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법 제30조의5&gt;</p> <p>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b>명의를 사용하게</b>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을 것</p> <p>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p><b>p512</b> 수상구조법 위에서 21째줄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p>	<p><b>오</b></p> <p>4. <b>법 제30조의5에 따른</b>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b>정</b></p> <p>4. <b>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b>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b>p521</b> 수상구조법 위에서 12째줄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p>	<p><b>오</b></p> <p><b>신설 삽입</b></p>
	<p><b>정</b></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법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p> <p>2. 법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lt;법 제44조의2&gt;</p>
<p><b>p545</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에서 3째줄 (2021.4.13. 개정.시행)</p>	<p><b>오</b></p> <p><b>신설 삽입</b></p>
	<p><b>정</b></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p547</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9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b>우</b></p> <p><b>4 연안사고예방협의회</b> &lt;법 제8조&gt;</p> <p>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p>
	<p><b>정</b></p> <p><b>4 연안사고예방협의회</b> &lt;법 제8조&gt;</p> <p>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p>
<p><b>p550</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21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 <b>삭제</b></p>	<p><b>우</b></p> <p><b>1 안전수칙과 안전교육</b> &lt;법 제11조&gt;</p> <p>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b>정</b></p> <p><b>1 안전수칙</b> &lt;법 제11조&gt;</p> <p><b>제3항 삭제</b></p>
<p><b>p552</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21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b>우</b></p> <p><b>2 안전교육 수수료</b> &lt;법 제11조의2&gt;</p> <p>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b>정</b></p> <p><b>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b> &lt;법 제11조의2&gt;</p> <p>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li> <li>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li> </ol> <p>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를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b>p552</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아래에서 11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오</p>	<p>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p> <p>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p>
	<p>정</p>	<p>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2. 삭제</p> <p>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p>
<p><b>p553</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9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오</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b>14일</b>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정</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b>7일</b>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b>p553</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17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오</p>	<p><b>신설 삽입</b></p>
	<p>정</p>	<p>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p554</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4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 <b>신설</b></p>	<p>오</p>	<p><b>신설 삽입</b></p>
	<p>정</p>	<p><b>⑤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b> &lt;법 제13조의2&gt;</p> <p>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b>p555</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p> <p>위에서 3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 <b>개정</b></p>	<p>오</p>	<p><b>⑦ 122 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b> &lt;법 제16조&gt;</p> <p>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b>122연안순찰대</b>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b>122연안순찰대원</b>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정</p>	<p><b>⑧ 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b> &lt;법 제16조&gt;</p> <p>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b>연안순찰대</b>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b>연안순찰대원</b>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p556</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에서 1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 개정</p>	<p><b>오</b></p> <p>⑩ <b>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b> &lt;법 제17조&gt;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b>민간연안순찰요원</b>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b>민간연안순찰요원</b>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b>민간연안순찰요원</b>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b>정</b></p> <p>⑪ <b>연안안전지킴이 위촉</b> &lt;법 제17조&gt;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b>연안안전지킴이</b>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b>연안안전지킴이</b>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b>연안안전지킴이</b>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b>p559</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에서 7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 신설</p>	<p><b>오</b></p> <p><b>신설 삽입</b></p>
	<p><b>정</b></p> <p>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b>p559</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7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b>오</b></p> <p>1. <b>제11조제3항에 따른</b>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b>정</b></p> <p>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b>p559</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2째줄 (2021.4.13. 개정. 10.14시행)</p>	<p><b>오</b></p> <p>② <b>제10조제1항에 따른</b>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정</b></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p>
<p><b>p562</b>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1항6호 위에서 11째줄 (2021.1.5 개정시행)</p>	<p><b>오</b></p> <p>6. <b>호버크래프트</b></p>
	<p><b>정</b></p> <p>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p>
<p><b>p568</b>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1]</p>	<p><b>오</b></p> <p>■ 면허시험의 실격사유 &lt;시행규칙 제4조&gt; [별표1]</p>
	<p><b>정</b></p> <p>■ 면허시험의 실격사유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lt;시행규칙 제4조&gt; [별표1]</p>

<p>p56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별표4]에서</p>	<p>오</p>	<p>면허시험의 면제 ①의 1.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①의 2. 3.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①의 5.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①의 6.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①의 7.에 해당하는 사람</p>			
	<p>정</p>	<p>면허시험의 면제 1.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2. 3.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5.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6.에 해당하는 사람</p> <p>면허시험의 면제 7.에 해당하는 사람</p>			
<p>p59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아래에서 1째줄 (2020.11.27. 개정.시행) 신설</p>	<p>오</p>	<p><b>신설 삽입</b></p>			
	<p>정</p>	<p>▶ <b>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b> &lt;시행규칙 제35조&gt;</p> <p>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별표 11] &lt;신설 2020. 11. 27.&gt;</p> <p>■ <b>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b>(시행규칙제35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준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블롭점프)</td> <td> <p>가. 에어매트의 공기주입구 및 표면,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p> <p>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p> <p>다. 점프대 위와 아래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p> <p>라. 이용자가 구멍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p> <p>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td> </tr> </tbody> </table>	구분	준수사항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블롭점프)
구분	준수사항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블롭점프)	<p>가. 에어매트의 공기주입구 및 표면,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p> <p>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p> <p>다. 점프대 위와 아래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p> <p>라. 이용자가 구멍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p> <p>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p654 낙시관리 및 육성법 위에서 6째줄 (2021.4.13. 개정.시행) 신설</p>	<p>오</p>	<p>③ <b>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b>는 관할 구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 1항에 따라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b>낙시제한기준</b>을 정할 수 있다.</p> <p>④ <b>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b>는 제3항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낙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정</p>	<p>③ <b>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b>는 관할 구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④ <b>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b>은 제3항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낙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p658 낙시관리 및 육성법 아래에서 11째줄 수정</p>	오	㉔ 허가의 취소 등
	정	㉔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p>p665 낙시관리 및 육성법 [별표 4] 위에서 14째줄 삽입</p>	오	[별표 4] 1. 안전·구명설비 - 파 삽입
	정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p>p665 낙시관리 및 육성법 아래에서 10째줄 수정 및 삽입</p>	오	③ 낙시어선 안정성 검사증서의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2항>
	정	<p>② 낙시어선 안정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lt;시행규칙 제16조의4 제2항&gt;</p> <p>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lt;시행규칙 제16조의4 제3항&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초로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li> <li>2.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li> <li>3.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li> </ol>
<p>p668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아래에서 10째줄 수정 및 삽입</p>	오	<p>■ 낙시어선의 운항규칙</p> <p>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p> <p>7.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정	<p>■ 낙시어선의 운항규칙</p> <p>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운항정지(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p> <p>7.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를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p>
<p>p676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아래에서 1째줄 삽입</p>	오	삽입
	정	<p>▣ 시행규칙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p> <p>①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낙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li> <li>2. 낙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li> <li>3. 낙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낙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li> <li>2.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p>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b>p704 수산업법</b> 위에서 14째줄 (2021.1.5. 개정시행)	오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b>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b> 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b>안강망</b> 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정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b>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b> 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b>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b> 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b>p705 수산업법</b> 아래에서 10째줄 삭제	오	<b>3</b> <b>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b> ▶ <b>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b> <법 제41조 3항>
	정	<b>3</b> <b>구획어업</b> ▶ <b>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b> <법 제41조 3항>
<b>p706 수산업법</b> 위에서 11째줄 삭제	오	<b>삭제</b>
	정	<b>2</b> <b>육상해수양식어업</b>
<b>p709 수산업법</b> 위에서 10째줄 삽입	오	<b>삽입</b>
	정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신고어업의 신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b>p710 수산업법</b> 위에서 5째줄 삽입	오	<b>삽입</b>
	정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b>p728 양식산업발전법</b> 위에서 14째줄 삽입	오	☑ 시행령 제3조(외해)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b>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b> 을 말한다.
	정	☑ 시행령 제3조(외해)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b>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b> 을 말한다.
<b>p827 항만법</b> 아래에서 12째줄 삽입	오	<b>2. 기능시설에 삽입</b>
	정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의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b>p830 항만법</b> 아래에서 9째줄 수정	오	<b>수정</b>
	정	<b>3</b> <b>중앙항만정책심의회</b> 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시행령 제4조> 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

		<p>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p> <p>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p> <p>3. 항만의 개발·운영, 도시·군계획, 건축·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p> <p>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p> <p>⑤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중앙심의회 위원장 또는 분과심의회 의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b>③ 지방항만정책심의회 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b> &lt;시행령 제8조&gt;</p> <p>① 지방항만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지방심의회는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시·도지사 소속 지방심의회는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서 하며, 각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li> <li>관할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li> <li>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지방심의회는 위원장은 지방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⑤ 지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지방심의회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p853 어촌어항법 아래에서 11째 줄 수정</p>	<p>오</p>	<p>▣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b>대합실</b>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lt;시행령 제2조&gt;</p>
	<p>정</p>	<p>▣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b>대기실</b>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lt;시행령 제2조&gt;</p>

<p><b>p928</b> 경제수역어업주 권법 아래에서 3째줄 (2021.5. 개정.시행)</p>	오	3. 부속선의 <b>척수</b>
	정	3. 부속선의 <b>선박수</b>
<p><b>p931</b> 경제수역어업주 권법 시행규칙 아래에서 3째줄 (2021.6.30. 개정.시행)</p>	오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b>표지기</b> 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정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b>표지깃발</b> 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 <b>해야</b> 한다.
<p><b>p955</b>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아래에서 5째줄 (2021.3.5. 개정.시행) <b>신설</b></p>	오	<b>신설 ① 다음에 삽입</b>
	정	<p><b>▣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b> &lt;시행규칙 제2조의2&gt;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li> <li>2. 해양 대테러 조직·인력·시설·장비의 확충·관리 3.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li> <li>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li> <li>5.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li> </ol>
<p><b>p957</b> 해양경비법 시행령 아래에서 5째줄 (2021.5. 개정.시행)</p>	오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b>투색총(投索銃)</b>
	정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b>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b>
<p><b>p962</b> 해양과학조사법 위에서 2째줄 (2020.12.22.개정..21..6.23 시행) <b>삽입</b></p>	오	<p><b>1 목적</b> &lt;법 제1조&gt;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정	<p><b>1 목적</b> &lt;법 제1조&gt; <b>대한민국 국민</b>,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p969</b> 해양과학조사법 위에서 6째줄 (2020.12.22.개정..21..6.23 시행) <b>신설 삽입</b></p>	오	<b>신설 삽입</b>
	정	<p><b>2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b> &lt;법 제20조의2&gt;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p>

		<p>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p970 해양과학조사법 위에서 1제출 삽입</p>	<p>오</p>	<p>③ 다음에 <b>삽입</b></p>
	<p>정</p>	<p>▣ <b>조사자료목록</b> &lt;시행령 제17조&gt;</p> <p>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요청은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종료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횟수는 연 4회이내로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당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 종료후 10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p> <p>③ 조사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목록을 지체없이 다른 관리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p>
<p>p978 해양경찰법 위에서 8제출 (2021.1.14시행)</p>	<p>오</p>	<p>④ 다음에 <b>삽입</b></p>
	<p>정</p>	<p>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p> <p>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p978</b> 해양경찰법 아래에서 5째줄 (2021..1.14시행) 개정 및 신설</p>	<p><b>요</b></p>	<p><b>4 직무</b> &lt;법 제14조&gt;</p> <p>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b>경호·경비·대테러작전</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b>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③ 해양경찰은 <b>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b></p> <p>④ 해양경찰은 <b>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b></p>
	<p><b>정</b></p>	<p><b>4 직무</b> &lt;법 제14조&gt;</p> <p>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b>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b>피해자 보호</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b>정보의 수집·작성·배포</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④ 해양경찰은 <b>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b></p> <p>⑤ 해양경찰은 <b>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b></p>
<p><b>p979</b> 해양경찰법 아래에서 1째줄 (2021..1.14시행)</p>	<p><b>요</b></p>	<p><b>신설</b></p>
	<p><b>정</b></p>	<p><b>6 수사의 지휘·감독</b> &lt;법 제15조의2&gt;</p> <p>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p> <p>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p>

		<p>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 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p> <p>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	--